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38호 2019. 6. 18.(화)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385호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남해군 조례 제2386호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7
남해군 조례 제2387호	남해군 정책고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10
남해군 조례 제2388호	남해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남해군 조례 제2389호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남해군 조례 제2390호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4
남해군 조례 제2391호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	28
남해군 조례 제2392호	남해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0
남해군 조례 제2393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33
남해군 조례 제2394호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8
남해군 조례 제2395호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55호	남해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47
---------------	-----------------------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73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승인고시	51
------------------	-----------------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818호	2030 남해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열람 공고	52
-------------------	-------------------------	----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385호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6월 1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토석, 사력 등” 을 “토석·모래·자갈 등” 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한국농촌공사” 를 “한국농어촌공사” 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토석, 사력 등” 을 “토석·모래·자갈 등” 으로, “6월이상” 을 “6개월 이상” 으로 한다.

제7조 중 “토석, 사력을 허가량 만큼” 을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사항별란 중 “토석, 사력등” 을 “토석·모래·자갈 등” 으로 하고, “한국 농촌공사” 를 “한국농어촌공사”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등 산정 기준표

구 분	산 정 기 준
1.공작물 설치 (군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100분의 1 <개 2006.4.28>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 (골재채취업은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하천구역 내의 <u>토석·모래·자갈</u>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 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에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하천부속물의 점용	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	<p>가) 전기 사업 초당 1세제곱미터이상 사용 시 연액 2십만원</p> <p>나) 공업용수 (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p> <p>다) 농업용수 (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 초당 0.05 ~ 0.5세제곱미터까지 연액 1만원 ○ 초당 0.5세제곱미터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p>
5. 지하의 유수 채취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배수(주수)	<p>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 4항의 "나"목의 3분의 1 다만, 월 1만세제곱미터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p>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 5호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 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 4항의 "나"목의 4분의 1 다만, 월 1만세제곱미터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7.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p>가) 군내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u>토석·모래·자갈</u>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p> <p>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p> <p>다) "가"호 및 "나"의 조사는 2개 지역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p>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별표3]

허가수수료의 기준

사 항 별	수 수 료 액
1.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 개축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 성토등 토지의 형상변경의 허가 2. <u>토석·모래·자갈</u>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 3. 기타(소하천의 점용, 하천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허가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u>한국농어촌공사</u> 가 받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허가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점용료의 1천분의 1 점용료의 1천분의 1 없음

남해군 조례 제2386호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6월 1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앴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시책 등 "이란 남해군(이하 " 군 "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 일몰 "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남해군수(이하 " 군수 "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한 일몰 여부를 남해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남해군의회 의장은 매년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으면 군수에게 해당시책 등에 대한 일몰을 권고 할 수 있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책 등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해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 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서장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일몰을 결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일몰 대상 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387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6월 1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군정의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남해군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남해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군정발전과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및 의견 제시
3. 군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단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석사급 이상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자문단 운영) ① 정책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상설 분과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자문단은 자문을 희망하는 부서의 요구에 따라 군수가 위원 중에서 책임자를 지명하여 구성한다.

제8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나 단장의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분과회의는 자문을 희망하는 소관 부서장이 단장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④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구분하여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전체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각각 기획예산담당관과 정책기획팀장이 되며, 분과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소관분야 업무담당팀장과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사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① 단장은 제2조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위원 또는 분과자문단에 특정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 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사항의 통보) 자문단에서 의결된 사항은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및 협조)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금지) 자문단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①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특정시책의 자문요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남해군 조례 제2388호

**남해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6월 1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389호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6월 18일

남 해 군 수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를 “남해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체육센터” 를 “문화센터”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체육센터” 를 “문화센터” 로, “남해문화체육센터” 를 “남해 문화센터” 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일 주간 : 09:00부터 18:00까지
2. 야간(영화관의 휴무일에 한정함) : 18:00부터 22:00까지

제1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다목적홀의” 를 “다목적홀을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에” 를 “각종 대회 및 행사에” 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 중 “문화체육센터” 를 각각 “문화센터” 로 한다.

별지 제1호 중 사용일시의 사용시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일 주간 09:00~18:00 (:) ~ (:)	평일 야간 18:00~22:00 (단, 영화관의 휴무일에 한함) (:) ~ (:)
------------------------------------	---

별지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중 사용일시의 사용시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간 09:00~18:00 (:) ~ (:)	야간 18:00~22:00 (:) ~ (:)
---------------------------------	---------------------------------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해문화센터 사용료 기준

1. 영화관 목적 외 **대관료** (단위 : 원)

구분	평일		유 료 입장시	비 고
	주간	야간(영화관 휴무일)		
공연	45,000	50,000	수입액의 20% 징수	부가세(10%) 별도

2. 영화관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설비	기준	요 금	비 고
냉 · 난방	냉방료	1회	40,000	2시간 기준
	난방료	1회	35,000	2시간 기준

3. 다목적홀 대관료 (단위 : 원)

구분	토 · 공휴일		평일		유 료 입장시	비 고
	주간	야간	주간	야간		
문화 및 집회 기타 의 목적	60,000	70,000	50,000	60,000	수입액의 20% 징수	부가세(10%) 별도

4. 다목적홀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설비	기준	요 금	비 고
냉 · 난방	냉방료	1회	40,000	2시간 기준
	난방료	1회	35,000	2시간 기준

5. 공통

○ 사용시간

- 주간 : 09:00 ~ 18:00(9시간)
- 야간 : 18:00 ~ 22:00(4시간)

[주간, 야간으로 사용료 기준을 분류하며, 사용시간 2시간을 1회로 간주한다]

- 1시간 미만 초과 사용시는 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은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며, 2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는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단, 주간에서 야간으로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야간의 사용료 기준으로 가산함.
(초과해서 사용하려는 시간대에 사용자가 있을시는 초과사용 불가)

남해군 조례 제2390호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6월 1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청사 신축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 신축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청사 후보지 선정 및 신축에 관한 사항
2. 군 청사 신축에 대한 군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군 청사 신축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재무과장, 도시건축과장, 남해읍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명 이내
2. 주민대표 9명 이내
3. 교수 1명
4. 언론인 3명 이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위원이 사임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사신축 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9조(의결사항의 제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10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2명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간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남해군 신축 청사 준공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남해군 조례 제2391호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6월 1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392호

남해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6월 1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남해군을 관할지역으로 등록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남해군민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임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남해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대상 범위는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에 한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법
인 또는 남해지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법인 또는 남해지부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
지 아니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
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393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6월 18일

남 해 군 수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한다.

제3조(「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1급 ~ 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4급 ~ 6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남해군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장애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로 한다.

제6조(「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제7조(「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의 개정)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인 경우” 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로 한다.

제8조(「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의 개정)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통영해양경찰서장
제12조제2호 중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 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한다.

제9조(「남해군 주차장 조례」의 개정)

「남해군 주차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
된 장애인” 으로 한다.

제10조(「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장애인” 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한다.

제11조(「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장애인” 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한다.

제12조(「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2호 중 “1~3급 장애인” 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수강료 감면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비 고
면 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u>장애의 정도가 심한</u>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u>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u> 장애인	
구비서류	1) 수강료 감면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 그 밖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남해군 조례 제2394호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6월 1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생활문화센터 사용료(제8조 관련)

1. 사용료(다목적실, 동호회실, 전시실, 악기연습실)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1시간)	비 고
다목적실	주간	7,000	1. 사용기준시간 ○ 주간 : 09:00 ~ 18:00 ○ 야간 : 18:00 ~ 21:00 2. 가산요율 ○ 냉·난방사용 시 50% 가산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10%) 미포함 금액임
	야간	10,000	
동호회실, 악기연습실	주간	1,000	
	야간	1,500	
전시실	1일	무료	

2. 사용료 반환(다목적실, 동호회실, 전시실, 악기연습실)

반 환 기 준		
운영자의 책임있는 귀책사유	1.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되지 못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사용자의 책임있는 귀책사유	1. 사용일 1일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남해군 조례 제2395호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6월 1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이용자에게”를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에게”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를 “제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를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6조 별표”를 “영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에 의한다.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 다.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재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치				관리책임		소속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설치 년도			공무원	직급							
	관리주체							성명							
관리인		(전화번호 :)		성별		남/여		월평균 이용인원		(남: /여)					
규모	부지 (m ²)	화장실 면적(m ²)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내부	외부	기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연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연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 설 현 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성별	남/여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m ² , 화장실 면적 : m ²									
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남해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없 음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55호

남해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공포한다.

2019년 6월 1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남해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남해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남해군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전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전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 결과 안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전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 - 73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승인고시

염해지구 연안정비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연안관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남 해 군 수

○ 염해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사업명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장소	사업구분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염해지구 연안정비사업	남해군수	남해군 서면 남상리 염해지구 일원	연안보전	이안제 L=150m 파라펫 L=255m	4,000	2019. 6.~ 2020. 12.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 - 818호

2030 남해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열람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2030 남해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18.

남 해 군 수

1. 열람내용

가. 건 명 : 2030 남해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나. 목표연도 : 2030년

다. 공간범위 : 남해군 전역 (A=357.67km²)

라. 주요내용

- 남해군의 도시쇠퇴 진단 및 분석
- 도시재생 기본구상 설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출 및 우선순위 선정
- 사업추진체계 구성 및 관리·운영 방안 등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9. 6. 18. ~ 2019. 7. 17.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나. 장 소 :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도시재생팀 및 남해군 도시재생센터,
전 읍·면사무소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055-860-3239) 또는 남해군 도시
재생센터(☎ 055-862-8426)로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